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절차 간소화〉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69호)

2026. 9.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 희 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절차 간소화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희용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24.
3. 회부연월일 : 2026. 2.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파크골프장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강·하천 인근의 유허공간을 활용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음. 파크골프장은 구조물 설치가 최소화된 친환경적 체육시설로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경미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파크골프장과 같은 체육시설도 일반 공작물과 동일하게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적용받고 있어, 행정절차가 장기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체육시설 조성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하천 유허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 생활체육 증진이라는 정책적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

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여가·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3조제10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 허가 절차 간소화

개정안은 파크골프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33조제10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 ⑨ (생 략)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⑩ 하천관리청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 중 파크골프장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친환경 체육시설의 설 치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규모 및 형태 등</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u>
--	---

현행법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이나 인근 지대의 침수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안 됨.¹⁾

1)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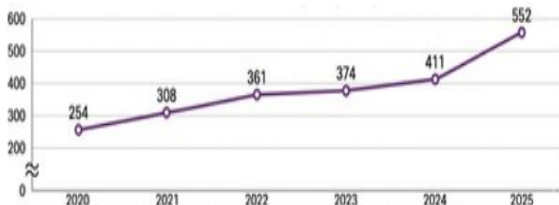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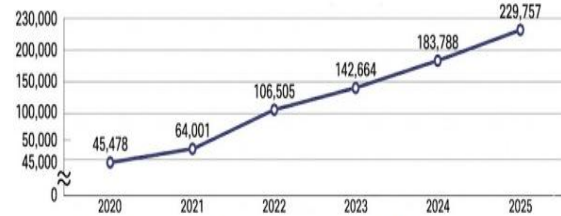
한편,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건강한 노년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체적 부담이 적고 시설 접근성이 우수한 파크골프²⁾의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국내 파크골프장 수는 2020년 254개에서 2025년 552개로 5년 만에 117.3% 증가하였고, 파크골프 참여 인구 또한 2020년 약 4.5만 명에서 2025년 22.9만 명으로 급증하였음.³⁾

그림 1 연도별 파크골프장 조성 현황



※ 자료: 정지규, 「한국파크골프의 현재와 미래」, 한국스포츠과학원, 2025.11., p.3.

그림 2 연도별 파크골프 회원 증가 현황



※ 자료: 정지규, 「한국파크골프의 현재와 미래」, 한국스포츠과학원, 2025.11., p.3.

출처: 강혜령, “파크골프가 모두의 생활체육이 되려면: 규제 완화를 넘어 공존 설계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제2496호), 2026.5.13.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증가⁴⁾함에 따라 파크골프장과 관련한 법

⑤ ~ ⑨ (생략)

「하천법 시행령」 제36조(하천점용허가의 금지) ① ~ ③ (생략)

④ 법 제3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하천의 비탈면 및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2. 선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또는 선박운항 구간이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또는 물놀이 행위
3.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4.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파크골프는 문자 그대로 공원(Park)에서 골프(Golf)를 즐길 수 있도록 일종의 변형된 골프로, 1983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한 지역 공무원이 노년층을 위해 고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하나의 클럽으로 티샷부터 퍼팅까지 할 수 있도록 도구와 규칙을 단순화한 것이 특징임.

(출처: 정지규, “한국 파크골프의 현재와 미래”, 한국스포츠과학원, 2025.11.)

3) 강혜령, “파크골프가 모두의 생활체육이 되려면: 규제 완화를 넘어 공존 설계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제2496호), 2026.5.13.

4) 파크골프의 인기 요인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간편한 규칙과 쉬운 난이도, 높은 접근성과 낮은 비용, 건강 증진 효과, 세대 통합과 사회적 교류 등이 꼽힘.

적·제도적 규제도 완화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6월 18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체육시설의 종류에 파크골프장을 포함⁵⁾시켰으며, 이를 통해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시설 확충의 기반이 마련되었음.⁶⁾

또한, 2025년 1월 22일 발표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⁷⁾을 통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가 허용되었음.⁸⁾

이에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설치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구역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고 있는 점⁹⁾을 감안할 때 개정안을 통해 파크골프장 등 체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구 분	체 육 시 설 종 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인공암벽장, 파크골프장 , 풋살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6) 위 입법조사처 보고서

7) 관계부처 합동,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2025.1.22.

8) 이에 앞서 2024년 11월 국토교통부는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파크골프장이 ‘실외체육시설’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음.

육시설의 설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의 생활체육 접근성 제고, 지역 주민의 여가 증진 및 생활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2026년 3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을 개정하여 하천구역에서의 파크골프장 설치기준¹⁰⁾을

9) 파크골프장의 입지 유형은 강·하천 인근이 6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공원 10.2%, 체육시설 내 6.9% 순으로 나타남.(출처: 장석원, “우리나라 파크골프장 현황 조사”, Weed & turfgrass science 제13권 제3호, 2024.9.)

10)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8조의3(레저·문화·체육시설) ① 야영장, 자동차야영장, 수상레저 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부대시설, 공항시설법에 따른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이 가능한 공간·시설 등 레저시설과 공연장, 관람장, 전시시설 등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중 생활체육시설(실외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1. 홍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이용객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2. 홍수시 이동가능한 구조물 설치를 우선 고려하고,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침수로 인한 유실우려가 없도록 설치할 것
3. 수질오염과 환경훼손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4. 주변의 거주자와 하천이용객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것
5.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이용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6. 시설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는 시설 투자비용과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것

② ~ ⑤ (생략)

⑥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설치 기준을 따를 것
2. 기존 체육시설의 배치 현황, 계획,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시설 간의 중복성이 없도록 할 것
3. 갑작스런 수위 상승 또는 잦은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하여 설치할 것
4. 홍수 시 이송잡물로 인한 배수영향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홍수예보 발효 시 구조물의 해체, 이동 등을 포함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5. 하천으로의 접근성을 차단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⑦ 제6항의 생활체육시설 중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천 수질오염 방지와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한 운영·관리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것
2.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 「자연환경보전법」 등 법령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준수할 것
3.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하천의 하폭·유량·유속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하천관리청이 고의·과실 또는 사고로 인한 농약 유출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기술검토를 통해 하류 취수장에 수질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할 것

마련하였는바, 파크골프장 설치와 관련한 하천점용허가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아울러, 파크골프 이용자가 주로 60~70대 이상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파크골프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연령층과의 갈등이 나타나는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의 특정협회 사유화 논란 및 시설 운영을 둘러싼 단체 간 마찰, 지역별 수요·공급 불균형과 무분별한 시설 확충에 따른 생태환경 훼손 등 파크골프장 확산에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¹¹⁾¹²⁾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파크골프장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바, 다른 법률안의 심사 경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¹³⁾¹⁴⁾

4. 쉼터,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제내지 등 하천 외 공간을 우선 확보할 것

⑧ 제28조의3의 각 항에서 정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동 시설로 발생한 민원의 처리 등에 대한 사항은 허가조건에 따로 명시할 수 있다.

11) 위 입법조사처 보고서

12) 관련기사

- 경인일보, “[이슈&스토리] 인천 파크골프장, 치솟는 인기와 반작용”, 2026.4.2.자 (URL: <https://www.kyeongin.com/article/1761295>)
- 경인일보, “백령도까지 ‘파크골프장’ 건설… 세대·지역간 새 갈등 요소 우려”, 2025.12.11.자 (URL: <https://www.kyeongin.com/article/1756312>)
- 경향신문, “하천 점령한 파크골프장…침수 땀 복구비만 수십억”, 2025.12.7.자 (URL: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72113015>)

13) 위 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는, 파크골프장은 조성되는 장소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하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다수의 법률과 연계되어 있어 개별 법령에 따른 분절적 관리로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았음. 이에 모든 파크골프장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입지 적정 기준 및 환경 기준 등에 관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장소별 특성에 맞는 세부 기준을 연계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는 장소별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준 미비에 따른 불법 조성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구역은 치수 기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공공자산이므로 파크골프장이 구조물 설치가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우수 흐름 등 치수적 검토가 필요하고, 특정 시설에 대해 법률상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별도로 완화하는 것은 제도의 일반원칙 약화 등 제도 운영의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현행 제도하에서도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어 별도의 규정을 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47

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제221697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제2216972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제2218046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대표발의, 제2217638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대표발의, 제2217632호)